

---

# 칼트로지스&SKU(주) 렉 설치공사

## 계약서

---

2020. 04

“갑” : 칼트로지스&SKU(주)

“을” :

# 공사도급계약서

1. 공사명 : 칼트로지스&SKU(주) 렉 설치공사
2. 공사기간 : 공사발주후 40일이내
3. 계약금액 : 一金 整 (₩\_\_\_\_\_ 원VAT 포함)
4. 계약이행보증금 : 계약금액의 100분의 10
5. 지체상금률 : 계약금액의 1,000분의 2
6. 하자보수보증금 : 계약금액의 100분의 5
7. 공사개요
  - 1) 공사위치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9로137
  - 2) 용도 : 파렛트 적재용 렉 999셀 설치공사(#도면 참조)
8. 대금의 지급 : 공사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지급
9. 안전관리 조건 : 근재보험 가입 (1인당 1억원 / 1사고당 2억원)
10. “갑” 측 제공 : 용전, 용수

도급인과 수급인은 상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0년 04월 일

[갑] 도급인

주소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9로137  
상호 : 칼트로지스&SKU(주)  
대표자 : 윤신 (인)

[을] 수급인

주소 :  
상호 :  
대표자 :

# 계약일반사항

본 계약서는 칼트로지스&SKU(주)(이하 “&SKU” 이라 한다)와 공사업체 \_\_\_\_(이하 “시공업체” 이라 한다)간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9로137 칼트로지스&SKU(주) 렉설치공사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.

## 제 1 조 (계약이행보증금)

- (1)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“&SKU” 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“&SKU” 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다.
  1. “칼트로지스&SKU(주)” 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
  2.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.
- (2) 계약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 2 조 (금액의 고정 및 물량 정산)

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한다.

## 제 3 조 (대금지급)

- (1) 계약자는 납품을 완성한 후 “&SKU”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품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(2) “&SKU” 은 제 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금액 전액을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.

## 제 4 조 (물량의 증감 및 규격 변동)

- (1) 계약물량은 “&SKU” 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.
- (2) 신규 규격 등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.

## 제 5 조 (지체상금)

- (1) 계약자는 계약서의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한 익일로부터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.
- (2) 제1항의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“&SKU” 의 사정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지체상금은 면제된다.
- (3) “&SKU” 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

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- (4)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#### 제 6 조 (하자보수보증 기간 및 금액)

- (1) 하자보수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목적물 인수도일로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- (2) 제 1항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, 또한 “&SKU”로부터 하자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.
- (3) 하자보수보증금은 전체계약금액(부가세포함)의 5%로 하며, 제1조의 방법으로 “&SKU”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(4) 계약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“&SKU”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“&SKU”에 귀속된다.

#### 제 7 조 (계약의 해지)

“&SKU”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절차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
2. 계약자의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한때
3. 2회 이상 검사에 불합격 할 때
4. “&SKU”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제출서류 등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연 시켰을 때
5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 하였을 때
6. “&SKU”의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시켰을 때
7.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#### 제 8 조 (하도급 금지)

계약자는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. 단, “&SKU”에서 인정한 전문납품 부분은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.

#### 제 9 조 (계약문서)

계약문서는 계약서, 내역서, 기타계약에 관한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.

#### 제 10 조 (복제 또는 타인에의 대여)

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“&SKU”의 승인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
## 제 11 조 (준용규정)

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“&SKU”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.

## 제 12 조 (조문의 제목 해석)

본 유의서의 각 조문의 제목은 독립하여 효력이 없다.

## 제 13 조 (청렴계약 이행)

- (1) 계약 양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,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
- (2) 계약 당사자가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거래단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제 14 조 (표제의 효력)

본 계약서상의 각 조문의 표제는 독립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조문 내용에 반하여 해석되지 아니한다.

## 제 15 조 (분쟁 해결)

- (1)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분쟁해결 또는 본 계약서, 입찰조건 및 기타 계약관계 서류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“&SKU” 와 “시공업체”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, 기타 상관습을 따르기로 하되 해결되지 않는 경우 “&SKU” 의 해석을 우선한다.
- (2)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.

**제16조(안전관리 및 재해보상)** ① “&SKU” 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“&SKU” 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“시공업체” 에게 있다. 다만, 설계상의 하자 또는 “&SKU” 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&SKU”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**제17조(건설근로자의 보호)** ① “시공업체” 는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, 임금 채권보장법, 고용보험법, 국민연금법,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, 임금채권보장제도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“시공업체” 가 도급받은 공사를

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“&SKU”는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,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,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응급조치)** ① “시공업체”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“&SKU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“&SKU”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“시공업체”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시공업체”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“시공업체”가 “&SKU”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“&SKU”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에 발생되는 전반적인 부대비용은 “시공업체”에서 부담한다.